



서울주택도시공사



수신자 서울특별시시장(서남권사업과장)
(경유)

제목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검토서 제출

1.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-5953호(2010.06.25.)와 관련입니다.
2.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대기질 측정 지점 위치 변경을 위해 협의기관장(한강유역환경청장)의 의견을 듣고자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관련 근거: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6호

-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(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협의 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- 마곡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(재협의) 협의의견(환경평가과-5953호, 2010.06.25.)

○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및 2항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변경 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우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유 및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청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함.

- 공원·녹지 축소, 공원·녹지 설치 지역 위치변경, 대기, 악취, 소음·진동, 수질, 토양 등 환경영향저감방안,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변경

- 변경 내용: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기질 측정지점(1개 지점) 위치 변경
 - ※ 향후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조사시 민원발생 등으로 조사지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, 당초 조사지점으로부터 100m이내 범위의 조사지점 변경은 협의기관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생략하는 내용 포함
- 변경 사유: 측정기간 장기화(2009년~2019년)에 따른 민원 발생

붙임 마곡환경보전방안검토서(9차). 끝.

